

지도자·선수 등록규정

(사)대한철인3종협회

지도자 □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

2005. 01. 25 제정
2014. 01. 26 개정
2014. 12. 13 개정
2017. 01. 21 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우리나라 트라이애슬론(이하 본 종목이라 함)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도자 및 선수육성과 클럽선수, 체육동호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도자·선수등록 및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의 등록과 활동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자구수정, 2016)

제 2 조 (정 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수등록”이라 함은 본 협회에 본 종목 선수로 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도자등록”이라 함은 체육회에 가맹된 가맹단체의 당해 종목 지도자로 지도자활동을 희망하여 정한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2014, 1. 26)
3. “체육동호인등록”은 체육회에 가입된 회원종목단체의 해당 동호인으로 동호인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
4. “등록선수”라 함은 본 협회에 본 종목 선수로 활동을 목적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5. “등록지도자”라 함은 체육회에 가맹된 가맹단체의 당해 종목 지도자로 지도자활동을 목적으로 지도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2014, 1. 26)
6. “등록체육동호인”은 체육회에 가입된 회원종목단체의 해당 종목에 동호인활동을 목적으로 동호인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
7. “신인선수”라 함은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당해 가맹단체에 처음 선수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2014, 1. 26)
8. “선수활동”이라 함은 선수등록을 필한 자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본 종목의 등록선수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9. “지도자활동”이라 함은 지도자등록을 필한 자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당해 종목의 등록지도자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2014, 1. 26)
10. “체육동호인활동”은 동호인등록을 필한 사람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종목의 등록 동호인으로서 각종대회 및 강습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
11. “회원종목단체”라 함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에서 정한 회원종목단체 중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자구 수정, 2016)
12. “체육특기자”라 함은 본 협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수등록을 마친 등록선수 가운데 당해 학교에 특례 입학한 학생선수 및 재학 중에 교육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단, 초등학교 은 선수등록 후 선수활동중인 자)
13. “정책종목”이라 함은 교육기본법의 관계법규에 의거 설치된 체육 중학교(또는

체육과)에서 정책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육상, 수영, 체조, 유도, 역도, 양궁, 사격, 레슬링, 복싱 등의 종목을 말한다.

14. “유급학생”이라 함은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동일급에 재학 중이거나 유급한 학년과 동일한 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15. “재수학생”이라 함은 각급 학교를 졸업한 후 당해연도에 상급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16. “등록변경”이라 함은 본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선수 등록된 자가 소속단체 및 등록지 등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7. “이적 동의서”라 함은 정해진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18. “클럽선수”라 함은 학교 또는 실업팀 등의 운동경기부 이외의 경기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승인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포함)에 소속된 선수를 말한다.
19. “동호인선수”라 함은 일반인 또는 학생, 청소년이 희망하는 종목을 정하여 당해 경기단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동호인부에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20. “체육동호인”은 성인이 희망하는 종목을 정하여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동호인부에 동호인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
21. “청소년체육동호인”은 청소년이 희망하는 종목을 정하여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동호인부에 동호인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
22. “지도자·선수등록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지도자·선수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회가 운영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신설, 2017)

제 3 조 (규정 제정)

- ① 본 협회에서는 대한체육회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과 규정에 따라 트라이애슬론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을 정하고 이를 체육회 보고하여야 한다.(자구 수정, 2016)
- ② 대한체육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단체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에 정한 사항이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의 등록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밖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가맹단체에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자구수정, 2016)

제 4 조 (적용범위)

- ① 본 협회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과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및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자구수정, 2016)
- ②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참가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대회 참가요강에 의한다.(자구수정, 2016)
- ③외국 국적자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국제협회규정 및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맹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경기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체육회가 인정하는 종목에 해당한다.(자구수정, 2016)

제2장 지도자, 선수 및 체육동호인 등록

제5조 (선수등록)

- ①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 또는 승인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 포함)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한다.
- ② 학생이외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일반부(실업팀) 및 제8조에 준하여 각각 선수등

록을 한다. (자구수정)

제6조(지도자등록) ① 지도자등록을 희망하는 지도자는 본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 또는 승인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 포함), 일반부(실업팀)소속으로 지도자등록을 한다.(2014, 1. 26)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도자는 등록할 수 없다.(2014, 1. 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7)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7)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17)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개정, 2017)
7.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개정, 2017)
8.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폭력(중)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17)
9.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개정, 2017)

③ 등록절차를 마친 지도자가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을 즉시 취소한다.(2014. 12. 13 신설)

제7조(체육동호인등록) ① 체육동호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본 협회의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소속으로 등록할 수 있다.(신설, 2017)

② 청소년체육동호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본 협회의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또는 학교스포츠클럽 소속으로 등록할 수 있다.(신설, 2017)

제8조(선수등록의 예외) ① 고등학교 재학중 선수등록을 하고 선수활동을 하던 사람이 고등

학교 졸업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실업팀으로 우선 재직 중에 또는 그 이후에 대학교(주야간 포함)에 진학한 사람은 본 협회의 결정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부(실업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할 수 있다.(2014, 1. 26) (자구수정, 2016)

② 제1항에 의하여 일반부(실업팀)로 선수 등록한 자는 대학소속으로 등록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야간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17조 제2항 7호에 의한다.(2014, 1. 26)

③ 제1항에 의하여 일반부(실업팀)로 선수 등록한 자는 다음 각호의 직장운동부 소속만을 말한다.(2014, 1. 26)

1. 기업체
2.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3. 공공기관 및 법인체
4. 시·도체육회 (근로소득지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카드 등 근로계약관

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제9조 (등록구분)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각 부별 등록연령(단, 연령 기준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협회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부를 둘 수 있다.

1. 초등부(13세 이하)
2. 중등부(16세 이하)
3. 주니어부(17세 이상 - 19세 이하)
4. U23세 이하부(23세 이하)
5. 일반부(엘리트부)
6. 동호인부

② 교도소(소년원 포함)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수는 소관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연령에 따라 각 부별로 등록할 수 있다.

1. 중등부(16세 이하)
2. 주니어부(17세 이상 - 19세 이하)
3. 일반부(엘리트부) U23세 이하(19세 이상)

③ 유급 선수 및 연령 초과 해당자의 연령은 제1항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연령 초과 선수의 등록) 제9조의 연령 제한에도 불구하고 적령의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여 연령이 초과된 선수는 시·도협회에 등록신청서 제출 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

제11조 (등록시기)

① 등록기간은 본 협회가 결정한 매년 5월 31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추가등록과 신인선수와 신설팀, 체육동호인은 예외로 한다. (자구수정, 2017)

② 추가등록기간은 매년 8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신인선수와 신설팀을 등록할 수 있다.

③ 선수등록은 등록 마감일까지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 신청된 선수까지 유효하다. (자구수정, 2017)

④ 지도자등록은 등록 마감일까지 지도자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 신청된 지도자까지 유효하다.(2014, 1. 26 자구수정)

제12조 (등록자격)

① 학생선수의 등록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학 및 학교급을 달리하거나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등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정해진 학교에 입학, 재입학, 복학, 전학 및 편입학 방법과 절차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2.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정해진 학교에 입학, 재입학, 복학, 전학 및 편입학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학교(전문대학 및 야간 대학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공고한 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당해 학기에 학생등록을 필한 자(학생등록의 학기는 학사 편입자를 포함하여 총 12학기까지 인정한다.)
3.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취업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여 본인의 지원(보호자 확인 날인)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대학원 재학생 포함)
4. 기타 본협회가 승인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 포함)에 소속된 사람

② 학생선수 이외의 일반 실업팀·동호인선수·클럽선수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일반 실업팀에 1년 이상의 일정기간 채용되거나 계약에 의해 소속을 정한 사람
 2. 동호인 또는 클럽선수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하여 3개월 이상 소속을 정한 사람
- ③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학생선수 및 일반부 선수의 경우 매년 20,000원의 선수등록비를 해당 시도협회에 납입해야 한다. 동호인 선수는 등록시 40,000원을 본 협회에 납입해야 하며 1회 납입으로 평생 선수등록이 유효하다.

제13조 (지원서의 관리)

- ①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취업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지원(보호자 확인 날인)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졸업예정자와 소속 학교장은 매년 3월1일 이후 1회에 한하여 지원 및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서를 접수받은 대학에서 입학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대학의 확인을 받아 타 대학에 재 추천할 수 있으나 졸업예정자가 진학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자구수정, 2016)
- ② 취업에 이용되는 지원서는 본 협회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지급받아 관리하여 진학 또는 취업하고자 하는 선수에게 1인 1매로 한정하여 본인의 서명날인 후 지급한다.(자구수정, 2016)
- ③ 취업을 위하여 소속단체장에게 추천을 신청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취업 추천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소속단체장은 추천서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추천서 사본을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협회는 이를 해당 팀과 기타 관련 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선수등록자격의 제한)

- ①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졸업예정자의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에 따른 등록은 당해 학교급에서의 최종학년도(자퇴) 이후로 한정한다.(자구수정, 2016)
- ② 학교팀의 단체경기에 있어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생을 혼성하여 단체등록 할 수 없으며, 동일재단 또는 동일구내 학교라 할지라도 혼성하여 등록할 수 없다.
- ③ 재학 중 휴학중인 사람과 해외유학생은 해당기간동안 당해 학교급 또는 일반부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2014, 1. 26 자구수정)
- ④ 군에 복무중인 사람은 대학 또는 실업팀 소속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단, 공익근무요원은 배정된 소속단체로 등록할 수 있으나 국군체육부대 및 경찰청 소속 선수는 예외로 한다.
- ⑤ 대학원 재학생 및 학생신분(제8조 제1항 제외)이 아닌 실업팀 선수는 일반부로 등록한다.
- ⑥ 외국에 등록된 선수이거나 외국 국적자는 본 협회에 일반부의 경우 선수 등록할 수 있다.
- ⑦ 동일인이 제9조에서 정한 각 부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회원종목단체에 중복하여 선수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회원종목단체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등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도를 달리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종목에 등록할 수 없다.
- ⑧ 이규정과 본 협회의 관리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의외의 경우에는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자구수정, 2016)

제17조(등록절차) ① 체육회가 운영하는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 관리시스템으로 다음 각호의 등록절차를 시행하여 시도체육회는 시도 협회의 예비심사기능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2014, 1. 26 자구수정)

1.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에서 동호인은 본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소속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2014, 1. 26 자구수정)

2.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카드를 포함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부를 작성하여 신청한다.(2014, 1. 26 자구수정)
 3. 시·도협회는 및 시·군·구 체육회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예비 심사 후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경유란에 확인하여 시·도체육회에 보고한다.
 4.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 체육회에서는 제출 받은 등록서류에 대해 1차 심사후 경유란에 확인하여, 본 협회에 확인요청을 해야 한다.
 5. 본 협회는 지도자·선수등록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도체육회에 확인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전국협회체에 통보한다.
- ②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은 등록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2014, 1. 26 자구 수정)
- ③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려는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은 체육회 및 체육회 협약단체가 제공하는 스포츠 인권, 도핑 방지 등의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 본 협회는 지도자·선수등록 마감일로부터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을 확정하여 2주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2014, 1. 26 자구수정)
- ⑤ 등록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의 기본정보, 경기실적, 상벌사항, 국가대표정보 등을 체육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및 자료 요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체육회 내규에 따른다.(2014, 1. 26)

제16조 (등록지)

- ①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은 해당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및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본 협회 산하에 있는 시·도협회 및 시·군·구체육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14, 1. 26)(자구수정 2016)
- ② 학교팀에서 대학의 본교와 분교가 서로 행정구역(시·도별)이 상이할 경우 행정구역 별로 각각 등록하여야 하며, 단체 등록은 본교와 분교를 각각 별도 팀으로 등록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혼성하여 등록하되, 등록지는 당해 학교가 지정하는 등록지로 한다.
- ③ 방송통신대 및 원격대학의 학교팀은 1회에 한하여 당해 학교가 지정하는 등록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정된 등록지는 변경할 수 없다.(2014, 1. 26)

제17조 (등록변경)

- ① 등록을 마친 자의 등록사항 변경은 변경사유를 심사하여 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결정하여 변경 조치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지 및 소속단체의 변경에 따른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정당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선수의 진학으로 인한 신입생의 경우
 2. 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생선수의 졸업 후 취업할 경우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협회 선수자격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자
 3. 군 입대 및 제대 후 원소속으로의 복귀 경우
 4. 소속단체의 해체 및 실업선수의 계약만료의 경우
 5. 정책종목을 육성하는 체육 중학교(또는 체육과)가 없는 시·도의 학생이 정책종목에 한하여 타 시·도 체육 중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을 허가받은 경우
 6. 동호인 선수는 거주지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희망에 따라 소속단체장의 동의 없이도 소속단체를 변경할 수 있으나 등록변경까지는 전 소속단체 소속으로 한다. (자구수정, 2017)
 7. 야간 대학선수의 경우 재학 중 실업팀 선수로 이적하거나, 실업팀 선수가 재직 중 야간 대학선수로 이적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등록변경 할 수 있다.
- ③ 이 규정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수등록의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

다.

제18조 (선수구제)

- ① 전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본 협회 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의조정하여 당해 소속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평정위원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기피할 경우, 해당 회원종목단체 스포츠평정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즉시 소속단체장 및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기피한 경우, 본 협회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소속단체장 및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④ 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중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협회에 대하여 즉시 부당 등록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활동

제19조(지도자활동의 자격) ① 가맹단체의 지도자등록 절차에 따라 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당해종목의 지도자로서 지도자활동을 할 수 있다.(2014, 1. 26)

② 지도자활동 여부는 등록절차에 따라 매년 지도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2014, 1. 26)

③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는 참가신청기간을 엄수하여 협회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하고 지도자 등록 및 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지도자에 대해서는 경기장 출입을 금지한다.(2014, 12, 13 신설)

제20조 (선수활동의 자격) ① 본 협회의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본 종목의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동호인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의 선수활동 여부는 등록절차에 따라 매년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제21조 (선수활동의 제한) ① 본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 참가에 따른 선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본 협회가 정하는 대회별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는 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학교(단체)의 최소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각급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와 해외유학선수가 원 소속으로 복귀할 경우에 한하여 3월말 현재 재학중인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선수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받은 사람 또는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선수등록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선수등록일로부터 최소 만2년이 경과한 때부터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학교급 및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만2년 동안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⑤ 프로 및 유사단체 선수에 대한 등록 및 대회 참가는 회원종목단체의 실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⑥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 협회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 징계에 따라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⑦ 제15조 절차에 의하여 선수등록신청한 사람이 당해 가맹단체의 최종 확정이 되지 아니한 자는 선수활동을 할 수 없다.(2014, 1. 26)

제22조 (선수활동 제한의 예외)

① 학교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소속학교가 운동부를 해체하여 당해연도에 당해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동일종목 운

동부를 설치한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관내 학교의 체육특기자 정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타 시도의 동일종목이 설치된 학교로 전학한 자.(2014, 1. 26)

2. 당해연도에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시도교육청 관내에는 동일종목 운동부가 설치된 학교가 없거나, 당해 관내 상급학교의 체육특기자 정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타 시도의 동일종목이 설치된 학교로 진학한 자.(2014, 1. 26)

3. 전 소속단체장이 특별한 사유(보호자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전출입이 확인될 경우 등에 준해 한정)를 인정하여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은 자이거나 당해 가맹단체 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이 확정된 자.

② 학교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 중 유급 또는 재수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14, 1. 26)

1. 가정빈곤의 사유로 부득이 유급 또는 재수한 사람으로서 당해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부상, 질병으로 유급한 학생 중 가맹단체가 정한 진단서를 첨부한 사람으로 입원으로 인해 수업일수가 부족하거나 입원 이외의 일반가료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사람 (단,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하는 경우 제외)(2014, 1. 26)

③ 학생선수이외의 신분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부상, 질병으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병의원장 또는 보건소장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한 자로 입원 하거나 입원 이외의 일반 가료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사람

2. 소속단체의 해체(2014, 1. 26)

3. 실업선수가 소속팀과 계약만료 또는 계약만료에 따른 사직이후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 선수등록을 변경한 사람. (단, 본 협회는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그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기간은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4. 군 입대 및 제대 후 원소속의 복귀시 가맹단체가 정한 선수등록 기한내에 선수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2014, 1. 26)

제23조(선수 실적발급) 선수 실적발급은 인터넷 경기실적 발급지침에 따른다.(2014, 1. 26)

제4장 징계조치

제24조 (제한조치) ① 대한체육회 또는 본 협회에서 정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선수 :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선수활동(동호인 포함) 금지 (보호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같다) (자구수정, 2017)

2. 관련된 임직원(단장,감독,코치 포함) : 최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당해 경기단체의 활동자격 정지

3. 학교 관련자(교장, 관련교사, 코치 등) : 소속기관장에게 의뢰하여 징계의뢰 (단, 감독, 코치는 제2호 조치 병행)

② 징계 만료이후 및 징계해제 후 재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③ 본 협회는 전항에 의거, 규정 위배자에 대하여 징계종류, 징계대상자 및 징계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평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자구수정, 2017)

④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선수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을 지연시켜 선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관계자는 그 자격을 최소 1년 이상 3년 이하로 그 자격을 정지한다. (자구수정, 2017)

- 제 25 조 (위반자 조치절차) ① 본 협회는 위반자에 대해 징계종류, 징계 대상자 및 기간 등을 결정하여 당해 본 협회 스포츠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② 학교관련자에 대하여 징계이외에 신분상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대한체육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징계가 확정된 후 그 징계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 또는 변경, 해제시킬 수 없다.
 ④ 징계조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 해제,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 제 26 조 (참가비 면제) ① 중등부, 주니어, 엘리트 대표선수에 대하여는 참가비를 면제한다.
 ② 동호인 선수의 경우 해당 연령대 랭킹에 따라 랭킹 1위는 참가비의 100% 2위는 참가비의 1/2 면제, 3위는 참가비의 1/3를 면제한다.(2014, 1. 26)
 ③ 65세 이상의 동호인 선수는 참가비를 면제한다.

- 제 27 조 (참가비 환불) ① 참가비의 환불은 대회일을 기준으로 13일 전까지 허용한다. 단 부상으로 인한 참가비 환불은 대회일을 기준으로 3일 전까지 허용하되,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환불한다.

제6장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제1조 (보칙 및 시행일) ① 동 규정 시행일 이전의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의 제한에 따른 적용기간은 본 협회의 2004년도 선수 등록 완료일로부터 소급적용하여 기산한다.
 ② 동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써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5. 1. 27)

부칙(2014. 1. 26)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과정) 이 개정 규정 제1조 ~ 제23조 지도자에 대하여는 2014년 지도자 등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12. 13)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13)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 21)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